

갑질피해 신고 등의 처리기준

제정 2019. 8. 30

개정 2020. 9. 14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원들 간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피해 신고 등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갑질 행위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직원이 연구원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금지되는 연구원 내 갑질행위) 연구원에서 금지되는 갑질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제반 행위

제 4 조(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국토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부서에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감사부서장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갑질행위 방지를 위하여 감사실 직원 중에서 갑질근절 전담직원(이하 “전담 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5 조(갑질 예방교육) ①연구원은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갑질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질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갑질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질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갑질 행위
3. 갑질 신고 및 상담절차
4. 갑질 사건 처리절차
5.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갑질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갑질 예방을 위한 조치

④연구원은 갑질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조(갑질 피해신고 시 처리절차)연구원은 갑질 피해신고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갑질 피해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조사의 실시
4. 정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갑질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 7 조(사건의 접수) ①누구든지 갑질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전담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갑질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 한다.

③피해자는 갑질 신고에 대한 원활한 조사나 민·형사상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구원에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4.>

제 8 조(상담) ①제7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전담직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전담직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와 상담한다.

③전담직원은 피해자에게 갑질에 관한 구제방법 및 연구원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 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전담직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감사부서장을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담직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당사자 간 해결) ①전담직원은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감사부서장을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담직원은 갑질 피해자가 행위자의 갑질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연구원 내 갑질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담직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 10 조(정식조사) ①연구원은 피해자가 갑질에 대한 정식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1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갑질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3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진담직원은 갑질조사 진행상황을 갑질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 11 조(조사위원회) ①갑질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구원의 비상임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감사는 연구원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12 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①연구원은 제10조에 따른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갑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 9. 14>

제 13 조(갑질 피해자의 보호) ①연구원은 갑질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갑질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연구원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갑질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연구원은 갑질 관련 조치후 갑질 피해(신고)자를 상대로 갑질 피해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 9. 14>

제 14 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연구원은 사건이 종결되면 갑질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갑질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